

수부취업, 기본권 보호장치를 만들어라 95.9.26

최근 노동부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주부들의 취업희망은 84%를 웃돌았다. 남편들도 아내의 취업을 바라고 있었다. 이런 수치는 새삼스러운 결과라기 보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상을 반영한 수치이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이런 조사수치에 사회가 왜 놀라는지 모를 일이다. 여성들에게 가사일 이외의 사회적 노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가장 큰 것이 육아일이다. 두번째 요인이 일상적인 가사노동, 세번째가 직무능력, 즉 기술능력 부재이다. 그외에도 남녀차별임금 등도 문제인데, 이런 해묵은 과제들이 아직도 그대로 쌓여있다.

얼마 전,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정부가 중소기업대책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추가유입을 허용했다. 외국인 노동력이 이미 1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무대책이다. 이 외국노동력이 국내산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저임인력난을 완화해준다는 식의 즉흥적 대책뿐이다. 중소기업의 저임인력난은 중소기업 문제의 구조적 접근없이 해결이 어렵다. 여성들의 취업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속도로 볼 때 노동력의 추가적인 확보와 재교육,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노동력에 대한 조사분석과 신기술교육, 직종전환과 같은 대책도 유용하지만 가용성이 높은 주부노동력의 노동시장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여성노동력의 고용촉진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 시간제 도입, 교육훈련확대 정책을 써왔지만,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공단의 주부들이 직업훈련기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여전히 육아때문에 취업하고 있지 못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5년 9월 현재 전국의 민·관 보육시설은 불과 8천2백여개소, 28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여성노동력의 고용형태를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조차 거의 없다. 파트타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늘었으나 실제노동이 정상고용노동, 심지어는 잔업까지 하면서도 정상고용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당국과 노동계는 주부노동력의 취업을 확대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 방안은 주부취업을 기업주들이 꺼려하거나 주부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